



◎ 국가균형발전위원회

◎ 산업자원부

기획예산처

모두가 잘 살기 위한 첫 걸음
국가균형발전특별법

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

국가균형발전특별법,
온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합니다

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전국 1일 생활권이 실현되었지만,
지역간,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의
정신적·경제적 거리는 더욱 멀어진 것이 현실입니다.

세계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
진정 부강한 나라는 균형잡힌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.

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산업과 문화를 간직한 지역,
함께 잘 사는 방법을 나누며 커가는 지방,



찾아보기 <<<



II

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

수도권 집중 심화

■ 수도권 집중의 현주소

- 수도권 면적은 전 국토의 11.8%('00년 기준)이나, 인구는 46.3%, 중앙정부 부처는 100%, 기타 공공기관은 79%('01년 기준), 30대 대기업 본사는 88.5%('00년 기준), 10대 명문대학은 80%, 제조업체는 57%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등 총량 경제력의 52.6%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



-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 집중도를 보면 지역총생산의 경우 46.3 : 53.7, 은행예금 및 대출은 70.4 : 29.6, 국세 및 지방세 비중은 70.9 : 29.1로 중앙과 지방의 경제력은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. (% , '00년 기준)



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

- 제조업·금융·서비스 산업의 지역간 편중이 심화되고 지방재정, 사회 기반 및 문화적 시설의 지역간 격차가 커지면서, 대도시 지가상승, 교통혼잡, 주택부족, 공해발생, 지방대학의 약화, 지역 인재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※ 수도권의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연간 사회적 비용이 10조원에 달하며, 2002년 말 현재 전국의 평균 주택 보급률은 100%를 넘어섰지만, 수도권은 92%, 서울은 82%에 불과합니다. 또한, 서울시 교통혼잡 비용은 4.7조원('00년 기준)에 달하는 실정입니다.

- 지역 갈등 심화와 지역주의 대두로 국민분열이 초래되고 있고 사회·경제적인 박탈감이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며, 궁극적으로 국가적 동일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.
- 중앙이 통제하는 지방화, 중앙의존적인 지방의 행태가 고착되어 가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또한,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성화 발전을 지연시켜 국가의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늦추고 있습니다.

수도권 인구비중의 국제 비교

- 외국의 경우, 주로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, 중앙 집권형 국가 중 프랑스는 국가균형발전추진단(DATAR)을 설치·운영하여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데 힘입어 2000년 현재 파리권의 인구비중이 약 18% 수준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


[Ⅲ]

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

1.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평가

■ 그동안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역대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, 수도권 집중현상은 가속화되어 왔습니다.

- 지방 발전 정책보다는 수도권 집중 억제 등 소극적 정책에 치중했고, 균형발전 정책을 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추진체계가 없어 여러 부처에서 단편적·분산적으로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, 체계적인 법·제도적 기반이 없어 대내외 여건변동에 따라 정책이 수시로 변동했기 때문입니다.

	주요시책 내용	평 가
'62 ~ '79 (3·4공화국)	•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('64) • 그린벨트 지정	•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규제적 수단 중심으로 추진
'80 ~ '87 (5공화국)	•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('82) • 수도권 규제범위를 경기·인천까지 확대	• 수도권억제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• '82년 올림픽 유치 이후 수도권 억제정책 완화
'88 ~ '92	• 지역균형개발 기화단 선진 ('89)	• 시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로 인한

2.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

■ 총량성장에서 질적 균형성장으로 전환

- 총량적 경제규모 위주 성장에서 삶의 질, 문화, 환경 등 생활의 제반여건을 두루 고려하는, 균형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.

■ 지방의 창의와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

- 지방 스스로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향적 발전체제로 전환합니다.

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추진

- 규제일변도의 수도권 관리에서 자립형 지방화와 수도권의 계획적·과학적 관리의 병행으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합니다.

■ 지방의 혁신능력과 특성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시책 추진

- 대학, 연구소, 기업, 시민단체 등으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,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대 육성, 지역특화발전 추진, 지역전략산업 선정 계획 등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■ 종합적 일관적 국가균형발전 추진

- 특별법 제정·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과 재원을 총괄 조정하는 종합적·일관적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합니다.

기존 패러다임

새로운 패러다임

3.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

■ 참여정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: 지방화를 통한 선진화

- 지방을 혁신의 주체로 육성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, 모든 지역에 '지역혁신체계'를 구축해 경제 전반을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시킴으로써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을 본격화하고자 합니다.

■ 균형발전의 비전 :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건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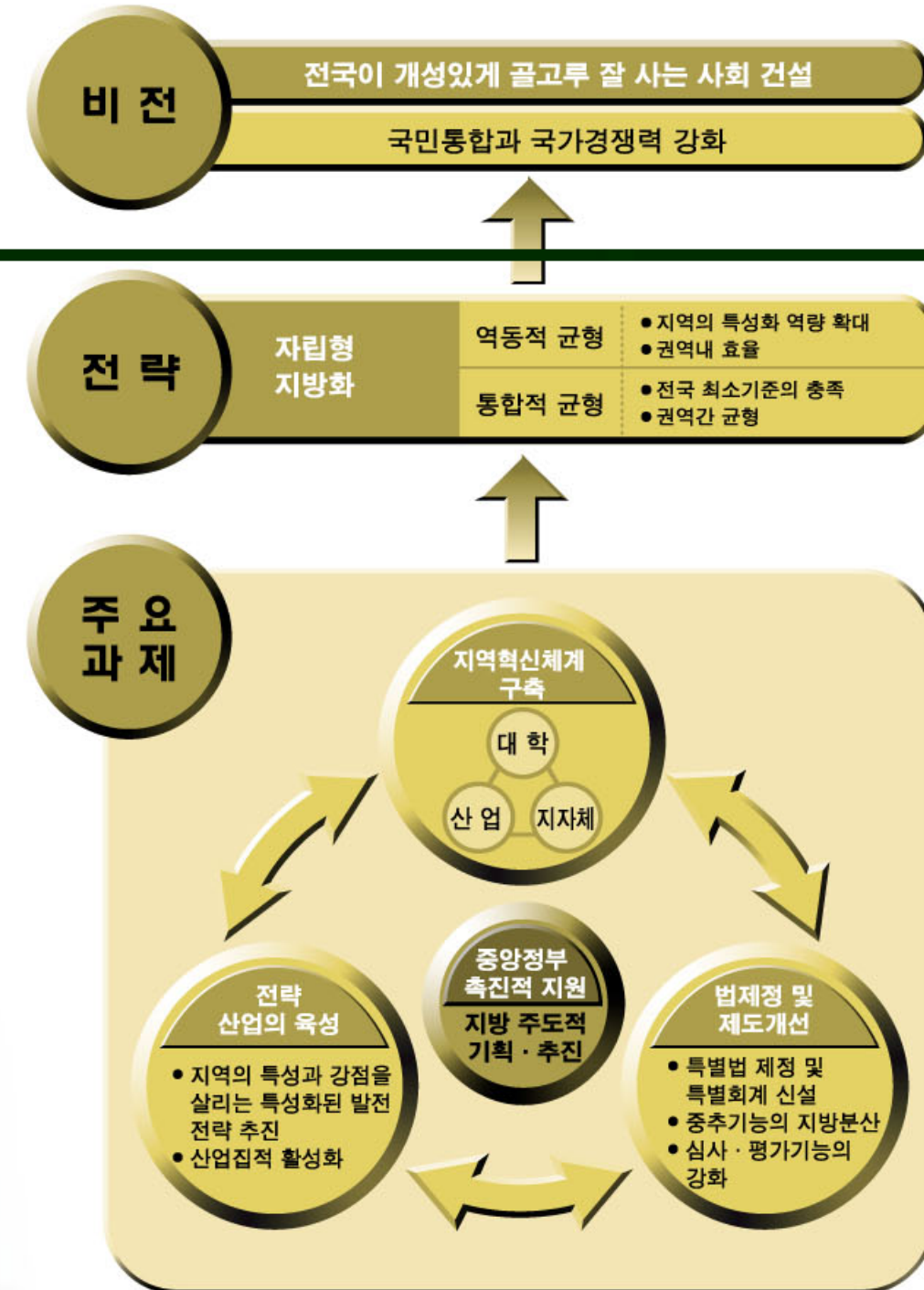
- 균형 없는 집권-집중 발전모델에서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균형-분산 발전모델로 전환하며, 기존의 불균형 발전을 극복하고 균형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.
-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비용 감축 및 지방의 잠재력 극대화로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.

■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으로 자립형 지방화 실현

- 지역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특성화 발전전략으로 권역내 효율을 실현하는 동시에 '전국 최소기준'의 충족을 통한 권역간 균형발전을 실현합니다.



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



[Ⅲ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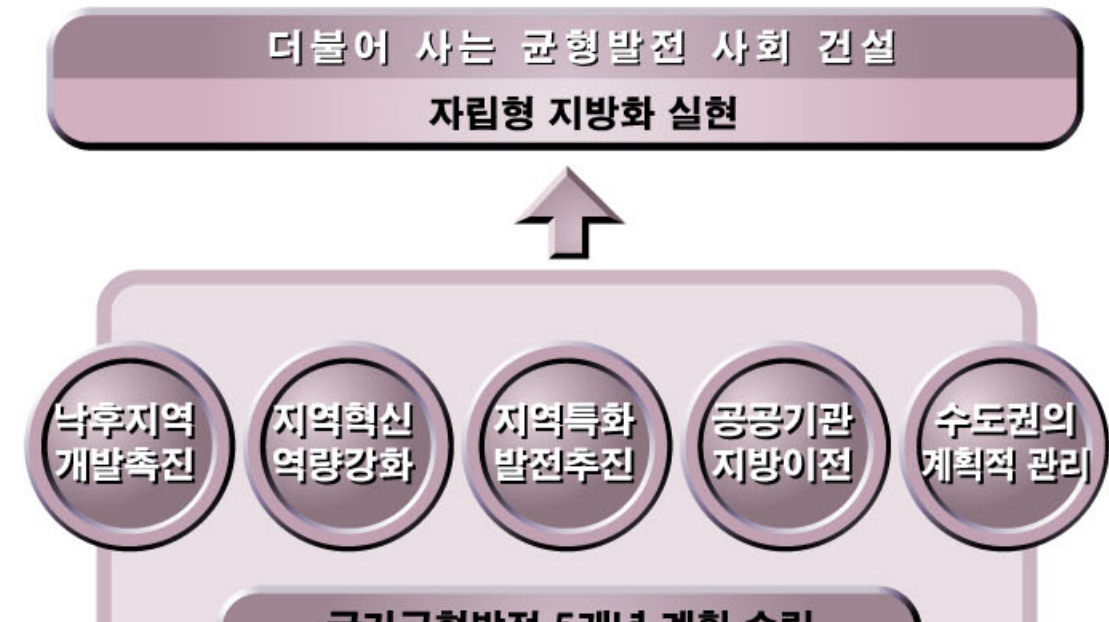
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틀

1.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 모색

- 지식정보화 사회 및 세계화의 심화 등으로 지방이 국제경쟁의 주체로 부상함에 따라 획기적인 지방육성정책이 필요합니다. 지방의 발전 없이는 중앙 지방 간의 균열과 갈등만 커지고 국가경쟁력도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
- 균형발전을 선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, 기금 등에 대한 재정지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.

2.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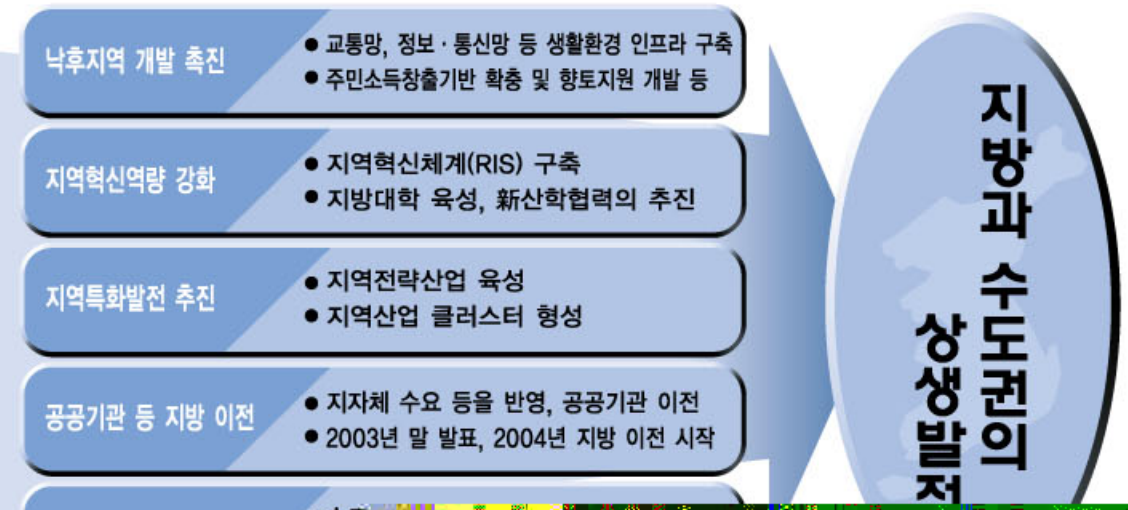


[IV]

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요 내용

1.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

2. 국가균형발전 시책 추진



나. 지역혁신역량 강화

■ 지역혁신체계(RIS) 구축

- 지역혁신체계란 지역혁신을 위하여 대학·기업·연구소·지방자치단체·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상호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합니다.
- 지방에 대한 R&D 예산 지원비중을 확대하고,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견인하여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지방대학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2003년 말까지 지역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실무기구 선정을 완료하고, 지역혁신사례집 및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 등을 작성·배포할 예정입니다.

■ 산학협력체계 강화

-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와 대학간 긴밀한 산학협력 관계를 유도하는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적인 발전 및 지역대학의 연구기반 구축을 도모합니다.

다. 지역특화발전 추진

■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

- 제조업, 문화, 관광, 물류, 유통 등 전 산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지역에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, 지역산업진흥사업(4대 및 9대 지역)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.
- 국가산업정책과 지역산업정책의 조화 차원에서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진합니다.

■ 지역혁신체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정책의 추진

-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에 대해 일관된 기획, 관리 및 평가체계를 확립하고, SOC 등 기존 하드웨어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산·학·연 등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결집 시킵니다.

■ 지역특성에 따라 '지역특화발전특구'를 설치, 지방의 특색있는 발전과 경제활성화 도모

-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특구를 제안하고, 중앙정부는 특구 지정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합니다.
- 2003년 말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고, 2004년 상반기 중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특구를 지정하도록 합니다.



● ● ●

나후지역의 발전이 촉진됩니다

지역간 불균형이 줄어듭니다

● ● ● ● ●



라. 공공기관 등 지방 이전

■ 과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

-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전국의 79%('01년 기준)로, 이는 수도권 집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.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방분산을 통해 민간부문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발전의 선도역할을 하도록 합니다.

■ 지방이전 기본방향

- 新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기 추진하고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을 이전하며, 각 기관의 자발적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.

■ 세부 추진방안

- 원칙적으로 기능별 유사기관을 집단 이전하되, 대규모 기관은 개별 이전을 허용해 지역의 활성화 발전을 유도할 것입니다.
- 이전 대상 기관과 해당 지자체 간에 상호협상 및 이전협약을 체결토록하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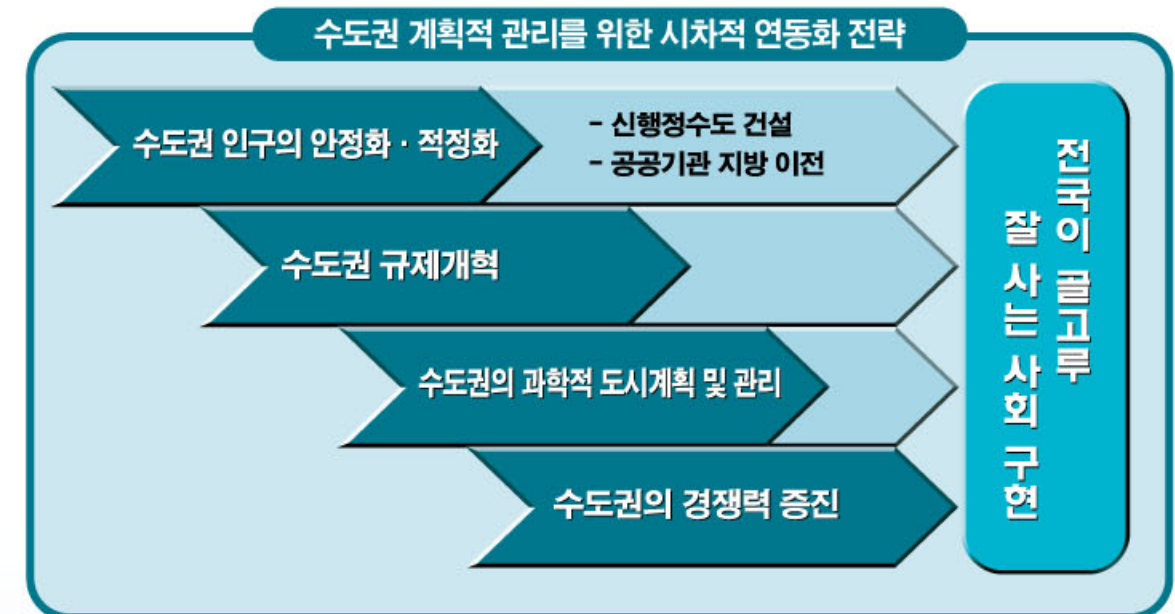
마.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

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(Win-Win) 도모

- 적극적인 지방자립기반 강화정책을 추진하고,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.
- 수도권은 양적(Quantity)성장에서 벗어나 혁신과 효율을 통한 질적(Quality)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

■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시차적 연동화 전략

-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·적정화, 규제개혁, 과학적 도시관리, 경쟁력 증진 등 관련 정책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



3.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



■ 국가균형발전위원회

-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하고 균형발전계획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입니다.
-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·의회의장협의체 추천위원,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지방 거주자로 구성합니다.

■ 국가균형발전기획단

- 위원회의 실무추진기구로서 위원회 소속 하에 설치되며, 관련 부처 및 시·도로부터 파견된

4.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

■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

- 보조금 등 지방 이전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지방의 기획능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립형 지방화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, 포괄적 재정지원으로 실질적 지방재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합니다.

■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마련

-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세,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 전입금, 과밀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약 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합니다.

■ 지역개발사업과 지역혁신사업으로 구분 추진

- ‘지역개발사업계정(지역간 불균형 시정분야)’ 과 ‘지역혁신사업계정(특성화발전분야)’ 으로 구분·설치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지역사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.

구 분	지역개발사업 (지역불균형시정)	지역혁신사업 (특성화발전)
사업 내용	•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 개발 • 지역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• 지역문화관광진흥사업 • 지역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• 향토자원 개발·활용	•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• 지역전략사업 육성사업 • 지방대학육성 및 지역 인적자원 개발 • 지역 과학기술 혁신사업 • 공공기관·기업·대학의 지방 이전
주요 재원	• 주세 80% • 토특재원(개발부담금 등) • 농특세 등 타 특별회계 전입금 • 일반회계 전입금,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	• 주세 20% • 통신사업특별회계 전입금 •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•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

